

오산시 꿈빛나래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규정

제정 2017년 3월 10일 훈령 제26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오산시가 직영하는 꿈빛나래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꿈빛나래 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은 경기도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청학로 125에 둔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시가 직영하는 문화의집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운영

제4조(운영원칙) ① 시장은 문화의집을 설치 목적과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의집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소년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고성방가, 혐오감 등으로 다른 이용자가 퇴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 문화의집 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운영시간	비 고
연 중	10 : 00 ~ 21 : 00	화~금요일
	10 : 00 ~ 18 : 00	토요일, 일요일
동절기 (11월~2월)	10 : 00 ~ 20 : 00	화~금요일
	10 : 00 ~ 18 : 00	토요일, 일요일
휴 관	-	월요일, 법정공휴일

제6조(시설사용방법 등) ① 문화의집 시설사용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운영시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화의집은 청소년전용시설로써 청소년 및 청소년 시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문화의집 정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정치적, 종교적, 영리목적 등 청소년시설의 설치목적에 반하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시설사용자가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시설 내에서 흡연 및 음주 등 시설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중에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설사용자는 시설 내 기자재의 위치변경, 부착물 등 시설물의 위치를 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며, 사용 종료 시 사용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직제 및 사무분장

제7조(관장의 역할) 관장은 문화의집 운영 및 청소년 프로그램 실행을 총괄한다.

제8조(공통사무) 문화의집 공통사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이용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발굴·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다른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시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9조(청소년활동사업) 청소년활동사업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3.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청소년활동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4. 사업실적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제10조(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아카데미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학습과정, 전문체험과정, 문화의집 주관 방과후활동, 토요체험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방과후아카데미 생활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지역연계 활용을 통한 방과후 참여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방과후아카데미 운영방안 및 후원에 관한 사항
5.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교육훈련) ① 관장은 직원자질 및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속 직원에 대해 전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 및 연수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직장 및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까지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경비 등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조정) 관장은 문화의집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 업무를 통합 또는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기간제근로자 관리 등

제13조(기간제근로자 관리)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오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근로시간) ①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정기휴관일은 휴무로 한다.

③ 업무특성상 청소년 행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휴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휴일근무를 한 경우에는 다른 날에 휴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 및 비상근무) 과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등 각종사고의 예방 또는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직 또는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업무) 직무로 인하여 알게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

오산시 꿈빛나래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규정

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시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7조(영리업무의 금지) 직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와 같이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득을 취득하거나, 시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5장 실습규정

제18조(실습운영) ① 청소년관련학과 대학(원)생이 청소년지도 현장실습을 원할 경우에는 우수한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실습생 자격 및 정원) ① 실습생은 2년제 이상 대학(원)생이며 청소년관련학과 재학생이어야 한다.

② 한 학기 실습생의 정원은 7명 이하로 한다.

제20조(실습지도자 역할) 실습지도자는 관장이 되며, 실습지도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습목표 설정
2. 실습지도 계획서 작성
3. 실습생의 실습목표 성취정도와 실습상황 확인 등
4. 실습관련 문제발생을 예방하거나 문제 상황 중재
5. 실습예산 집행

6. 실습평가서 작성

제21조(실습평가회) 실습종료 시에는 실습지도자의 주관 하에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실습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장 시설보안 및 안전관리

제22조(출입문 단속) ① 사무실은 최종 퇴근자가 창문개방, 화기단속 등 내·외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소등 후 퇴실하여야 한다.

② 퇴근 이후에는 당직자가 시설 내·외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폐문 후의 건물출입) ① 폐문 이후에는 건물출입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비상시 대책) 전 직원은 화재경보기, 소화기, 옥내 소화전, 비상계단 등의 위치와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비상시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25조(화기단속) 전 직원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물·발화물질 발화예방, 폭발물 및 위험물 반입 금지
2. 특수 장소의 가스, 전열, 석유를 사용하는 열기구는 관장이 승인한 장소에 설치
3. 퇴근 시 소화 및 소등 준수
4. 가스 사용방법 준수

제26조(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① 관장은 건축, 소방, 승강기, 전기 및 가스 등의 안전관리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문화의집 안전관리 및 점검
2. 소방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 가. 방화관리 대행업체 월 1회 점검
 - 나.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연 2회 전문업체 점검
3. 승강기 안전관리 및 점검
 - 가.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업체 월 1회 점검
 - 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연 1회 정기검사

오산시 꿈빛나래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규정

4. 전기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가. 전기 안전관리 대행업체 월 1회 점검

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연 1회 전기시설 안전진단

5 도시가스 안전관리 및 점검

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연 1회 점검

제27조(안전교육) ① 문화의집을 이용하거나 각종 강좌를 수강하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별 교육 시작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안전교육의 대상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의집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2.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해당 문화의집 이용 및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직원은 문화의집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 및 가스에 관한 사항

2.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위험발생시 대처방법, 시설이용자 안전 및 위생교육 등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